## 징계의결 무효확인의 소

소송종류	행정소송	법 원 명	대법원
사건번호	2017두○○○○	사건유형	기타
원 고		피 고	******
판결선고일	2017.05.18.	비고	
사건개요	원고는 ◇◇유치원 원장으로 「사립학교법」,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,「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」,「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」을 위반하여 직원 ●●에게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 보수 총 21,000천원을 지급하여 ◎◎◎◎◎◎ ◎◎ ◎(현 ◎◎◎) 특정감사 시 지적 받았으며, 이 사실에 따라 「교육공무원 징계령」등에 따라 감봉2월의 징계의결을 하였으나, 원고는 위원회의 징계절차의 하자, 징계사유의 부존재, 징계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.		
주 문	1. 상고를 기각한다. 2.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		
청구(항소)취지	1. 원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. 2. 소송비용은 1심, 2심, 3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		
판결이유	구 「사립학교법」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원고에 대한 임용권자로서 대외적으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원고에 대한 임용권자로서 대외적으로 징계처분 여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▼▼▼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, 피고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을 의결하기 위하여 교육행정기관의 내부에 설치된 위원회에 불과하고 징계처분 여부에 관한 행정청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. 따라서 이 사건 소는피고적격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. 또한 사립학교 교원인 원고에 대한 임용권자 ▼▼▼로부터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피고가 원고의 임용권자 ▼▼▼에 대하여 한 징계의결결과의 통지는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, 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다.		
결 론	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.		